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규약

제정 2007. 3. 30.
개정 2007. 8. 23.
개정 2009. 1. 29.
개정 2009. 8. 19.
개정 2010. 1. 19.
개정 2011. 1. 26.
개정 2012. 5. 9.
개정 2014. 3. 12.
개정 2014. 6. 25.
개정 2015. 3. 25.
전부개정 2018. 2. 2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설립근거 및 명칭) 이 규약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6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하며, 외국에 대하여는 Seoul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fferently Abled ‘약칭 SSAD’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적)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을 활성화하여 건강증진과 통합사회 가치를 실현하며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이하 ‘가맹단체’라 한다.)를 관리·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의 체육·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장애인체육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장애인체육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 2.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와 자치구장애인체육회의 관리·지원
- 3.장애인생활체육 교실운영·대회 개최,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전개
- 4.시·도 및 해외 도시간의 장애인체육교류
- 5.지역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 주관, 승인한 사업에 참가 및 주최, 주관, 후원, 지원 등

6.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동·하계, 학생) 참가선수단 훈련 및 참가
7. 장애인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방 장애인체육의 육성 및 보급
8. 특수학교·통합학급의 체육활동지원 및 장애학생 체력 향상과 통합체육수업 보급
9.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 육성
10. 장애인체육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
11. 장애인체육에 관한 홍보 및 각종 자료수집, 각종 간행물 발간
12. 지역의 장애인 체육정책 실현 및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자문
13.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및 기타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 5 조 (조직) 장애인체육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을 구성한다.

- ① 장애인체육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가맹단체로 승인한 가맹단체의 서울특별시 지부로 가맹단체를 조직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가맹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가맹단체'란 가맹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가 승인 의결한 단체를 말한다.
 2. '준가맹단체'란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의결로써 가맹을 승인한 단체로 가맹단체로서의 권리사항을 제한적으로 적용받는 단체를 말한다.
 3. '인정단체'란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의결로써 가맹을 승인한 단체로 해당단체의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 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 ③ 장애인체육회는 서울특별시의 각 자치구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지부는 '자치구장애인체육회'라고 정한다.
- ④ 가맹단체와 자치구장애인체육회의 설립요건 및 절차, 운영, 탈퇴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 6 조 (권리와 의무) 가맹단체와 자치구장애인체육회는 다음과 같이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①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② 장애인체육회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7조 (가맹 및 탈퇴) ① 가맹단체가 되려는 단체는 장애인체육회 가맹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탈퇴는 가맹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고 차기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③ 가맹단체가 제6조 제2항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장애인체육회의 가맹단체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2/3 이상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대의원총회

제8조 (구성) 대의원총회는 제5조 제2항의 각 정가맹단체 장으로 구성한다.

제9조 (권한) ①대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 2.임원의 선임(회장 제외)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3.정가맹단체의 가입, 강등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4.준가맹단체의 강등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5.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6.규약 및 제 규정이 대의원총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
- 7.기타 중요사항

②대의원총회가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전부 또는 일부의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 1.임원 전부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각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 1년 이상 경과한 임원에 대해서만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 2.임원의 해임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제의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제2항 제2호에 따라 임원의 해임이 의결되었을 때 당해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10조 (소집) ①장애인체육회의 정기 대의원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②임시 대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1.장애인체육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재적이사 과반수가 대의원총회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 3.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대의원총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 4.제27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③제2항에 따라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대의원이 소집할 수 있다.

④대의원총회 소집은 개최 7일 전에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집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1조 (의장) ①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제10조 제3항에 따라 이사 또는 대의원이 소집한 대의원총회의 경우 회장은 의장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출석대의원의 의결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③제1항에 의한 의장은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제2항에 의한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2조(의결정족수 및 의사) ①이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8조 의한 해당단체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대리인은 해당 대의원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 해당 단체의 장이 대의원총회 전에 장애인체육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대의원총회는 통지된 안전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 그 외의 안전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대의원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의장 또는 대의원 자신의 취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 2.자신과 장애인체육회 사이의 금전 또는 재산 수수를 수반하는 사안으로서 이해가 상충하는 사항

제14조(대의원총회 운영규정) 대의원총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15조(구성) 장애인체육회 이사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 1.장애인체육회 회장
- 2.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3.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 4.장애인체육회 이사

제16조(권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2.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4.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
- 5.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사무처장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
- 7.이사 보선에 관한 사항
- 8.준가맹단체·인정단체의 가입승인 및 인정단체 제명에 관한 사항
- 9.자치구장애인체육회 가입승인에 관한 사항
- 10.대의원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11.대의원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 12.기타 중요사항

제17조(소집) ①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 사무처장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2.제27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해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는 경우 재적이사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출석한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9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제16조의 각 호의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단, 차기 이사회에 이를 승인 받아야 한다.

제20조(이사회 운영규정) 이사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임원

제2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장애인체육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회장 : 1인
- 2.부회장 : 약간인

- 3.사무처장 : 1인
- 4.이사 : 20인 이상 35인 이내
- 5.감사 : 2인

제22조(회장의 선출) 서울특별시장은 당연직 회장이 된다.

제23조(부회장의 선임)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24조(사무처장의 선임) 사무처장은 부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 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25조(이사 및 감사 선임) ①이사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 담당 국장급 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담당 국장급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③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이사 정수에 5인 이상은 제5조에 따른 가맹단체의 대표를 선임해야 한다. 단 유형별 체육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2.장애인선수 출신 3인, 자치구장애인체육회 부회장 3인을 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3.동일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④감사는 부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감사 중 1명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대의원은 임원에 선임 될 수 있으나 재적이사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⑥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이사회 의 결의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나,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여성 임원이 재적임원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임원의 임기) ①회장의 임기는 서울특별시장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에 한하여 자동 연임된다.

④자문위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의 증원으로 추가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제2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사무처장, 이사,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⑦제2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중임 제한 기간에는 부회장 재임 기간도 포함된다.

⑧임원의 임기가 만료 후에도 후임자 취임하기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7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장애인체육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사무처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 유고시 부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⑤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회 재산을 감사하는 사항

2.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대해 회장,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사항

4. 제1호 및 제2호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를 발견하여 이를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사항

5. 제4호에 따라 이사회 또는 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

⑥임원이 장애인체육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⑦임원이 장애인체육회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제2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정관에서 정한 체육관련 단체 및 민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2호에서 정한 체육관련 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제2호에서 정한 체육관련 단체에서 폭력, 성폭력,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해태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②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④임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제29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회장 및 사무처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임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가 사임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제출 즉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임서 제출과 관계없이 당연히 사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1.제28조에 해당할 경우

2.가맹단체 및 자치구장애인체육회의 대표 또는 임원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한 경우

제30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각종 위원회

제31조(설치) ①장애체육회의 사업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1.인사위원회

2.자문위원회

3.법제상벌위원회

4.전문체육위원회

5.생활체육위원회

6.임원심의위원회

②기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가맹단체

제32조(가맹단체 조직) ①장애인체육회는 종목별 경기단체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로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맹단체를 조직한다.

②장애인체육회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가맹단체를 구분 한다.

제33조(강등 및 관리단체 지정) ①전문체육위원회의 평가 결과 2회 이상 부진단체로 지정된 가맹단체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 및 재적대의원 2/3 이상의 의결로 강등할 수 있다.

②장애인체육회는 가맹단체가 중대한 문제, 사고, 분쟁, 원만한 사업수행 불가 등 조직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관리단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것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통해 지정하고 운영한다.

제34조(규정) 가맹단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8장 자치구장애인체육회

제35조(자치구장애인체육회 조직) ①장애인체육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장애인체육회를 제5조 제3항에 따라 자치구장애인체육회로 조직 할 수 있다.

②자치구장애인체육회가 소재한 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자치구장애인체육회의 당연직 회장이 된다.

③제2항외 부회장 및 당연직 이사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5장을 준용한다.

제36조(가입 및 탈퇴) ①자치구장애인체육회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치구장애인체육회 가입은 이사회의 의결로 승인한다.

③자치구장애인체육회가 탈퇴하기 위해서는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탈퇴 사실은 차기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재산과 회계

제37조(재산의 구분) ①장애인체육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체육회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8조(재산의 관리) 다음 각호의 장애인체육회 재산을 양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 제공하거나 장애인체육회의 재정 또는 업무에 부담을 주거나 장애인체육회의 권리를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토지 및 건물

2.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주요 재산

제39조(재원) 장애인체육회 재원은 다음과 같다.

1.국비(국고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2.서울특별시 보조금 및 기금

3.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기부금 및 찬조금

5.사업수입금

6.기타수입금

제40조(잉여금의 처리) 장애인체육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 1.이월결손금의 보전
- 2.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 3.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1조(회계연도) 장애인체육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2조(사업계획, 예산, 결산의 승인) ①장애인체육회는 회계연도 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③장애인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기금 및 적립금) ①장애인체육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기금 및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44조(회계감사 등) ①장애인체육회의 회계감사는 연1회 실시한다.

제45조(가맹단체, 자치구장애인체육회 감사 및 징계) ①장애인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맹단체와 자치구장애인체육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 할 수 있다.

②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해태가 있는 임직원에게 대해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단체는 장애인체육회의 징계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장애인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는 법제상별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0장 사무처

제46조(사무처) ①장애인체육회는 사무집행을 위한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사무처장은 제27조 제3항에 따라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장애인체육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처 직원으로 신규 채용할 수 없다.

④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⑤사무처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에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단 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제47조(사무처 운영규정 등) 사무처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48조(경영공시) 장애인체육회는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 등을 공시한다.

제11장 보칙

제49조(규약개정) 장애인체육회의 규약변경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0조(규정의 해석 등) ①체육회의 규약은 가맹단체 및 자치구장애인체육회의 규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며, 장애인체육회의 규약에 위반되는 가맹단체 및 자치구장애인체육회 규약은 효력이 없다.

②가맹단체 및 자치구장애인체육회의 규약 중 장애인체육회의 규약 및 제규정과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에 관하여는 장애인체육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51조(제한사항) 가맹단체 및 자치구장애인체육회가 제6조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약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